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71
----------	-------

발의연월일 : 2025. 10. 14.

발 의 자 : 민병덕 · 한민수 · 김문수
이연희 · 오세희 · 임오경
박민규 · 이강일 · 진성준
김현정 · 김남근 · 박홍배
안호영 · 김승원 · 차지호
최혁진 · 이용우 · 이수진
신장식 · 문금주 의원
(20인)

찬 성 자 : 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되어 있어, 상장하지 아니한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하고 경영활동을 하여 시장의 감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사의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

사의 범위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펀드는 포함함으로써 사모펀드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 제1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4.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u>사모집합투자기구</u> 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④ ~ ⑫ (생략)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u> ----- ----- ----- --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u>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u>)로서 상장법인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 ----- ----- ----- ----- ----- <u>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되 사모집합투자기구</u>

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u>는 포함한다</u>-----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